

# 2023년도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8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39건(안건번호 제2023-29930호~3072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9930호~29949호(순번 1번~20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9950호~29989호(순번 21번~60번)는 블로그에서 뮤직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9990호(순번 61번)는 게시자가 해당 계정을 탈퇴하여 동일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시정권고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29991호(순번 62번)는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저작권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적법한 제품 판매에 대하여 행정조치로써 대응하기 보다는 권리자가 직접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29992호(순번 63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9993호(순번 64번)는 ㉠㉠㉠ 카페를 통해 영상저작물(방송)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83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4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2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9967호~1019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4개에 접속할 수 있는 22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8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93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2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2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및 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 해당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순번 1번~20번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번 내지 6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

으로,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임. 총 60개 게시물임.

(순번 33번 및 6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 및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의 목록이 다량 게시되어 있음. 다만, 순번 61번의 경우 현재 심의일 기준 해당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순번 21번~60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61번의 경우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일한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재차 일어날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점, 존재하지 않는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순번 21번 내지 60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순번 61번의 경우 게시자가 해당 계정을 탈퇴하여 동일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시정권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1번~6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순번 61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2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영상저작물의 일부분 등을 이용 중인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6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영상저작물 등을 이용 중인 사안으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대여 및 판매 형태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며 방송물의 일부 등을 복제

및 전송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타인의 영상물을 허락없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각 영상물은 판매중인 제품과 내용상 관련은 있으나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 등으로 볼 수 없는 별개의 저작물임.

만일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제한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시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각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직접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62번은 저작권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적법한 제품 판매에 대하여 행정조치로써 대응하기보다는 권리자가 직접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이와 더불어 쇼핑몰의 제품 사진 관련, 심의안건이 여러 차례 상정된 바 있으므로, 해당 사례들을 정리하여 추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 후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2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 공유 게시물 총 1건임.  
(순번 6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고 자막(.smi 파일)을 제작하여 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어문)을 제공중인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순번 63번은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

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3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4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카페에서 방송물을 각 제공 중이며, 총 18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64번은 각 게시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저작물(방송)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4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65번~80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83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영화, 만화, 출판,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65번~800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5번~80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020호~21051호(순번 1번~2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052호~21099호(순번 21번~6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100호(순번 6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100호(순번 62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100호(순번 6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100호(순번 64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020호~21051호(순번 65번~80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9967호~10191호(순번 1번~225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10.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최진원